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벤처기업 대상 ISMS 수수료 감면 확대〉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4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벤처기업 대상 ISMS 인증 수수료 감면 확대(안 제13조제3항)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9.

다. 회 부 일 : 2026. 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벤처기업 대상 ISMS 인증 수수료 감면 확대(안 제13조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보호 공시를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음(안 제13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② (생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③ ----- ----- ----- ----- ----- -----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은 100분의 50)-----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적합성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임.
- ISMS 인증제도는 정부가 ISMS 모델을 개발·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ISMS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항은 IS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¹⁾.
- ISMS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²⁾, 공공부문 사업 입찰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취득의 유인을 제공함³⁾.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한편,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⁴⁾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ISMS 인증과 정보보호 공시 모두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규정하나 일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와 ISMS 인증은 정보보호 수준 제고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효과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현행 정보보호산업법은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사업자가 ISMS 인증도 함께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ISMS 인증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런데, 정보보호 현황 자율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감면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ISMS 인증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 2024.7., p.12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 감면 대상이나 감면율이 30%로 동일하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 수수료 감면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음.

○ 이에,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한 경우, ISMS 인증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ISMS 인증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5)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을 전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 전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존재함.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수료 감면 확대 적용 대상이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확대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벤처기업 여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벤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공시 참여를 확대하고 공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을 제출함.
- 다만,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부 벤처기업은 현행 기준에서 이미 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35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